

대학평의회 운영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의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분진학원 정관 제19조 의해 설치된 대학평의회(이하“평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임무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구성) ① 평의회는 교원 ·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4명, 단 1명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 2. 직원 2명
 3. 학생 1명
 4. 동문 중 1명
 5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태백시장이 추천하는 1명, 태백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하는 1명, 태백지역관내 고등학교 교장 중 1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 3 조(교내위촉) 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.

②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각 구성단위 별 평의원은 각 단위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.

제 4 조(의장)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제 5 조(임기)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6 조(기능)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
1.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2.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
5.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
6.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7 조(회의소집 등) ① 평의원회는 학교의 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평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)

제 8 조(업무처리) ① 평의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 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의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6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회의비) 대학평의원회 개최 시 외부에서 위촉된 평의원(태백시장 · 태백상공회의소회장 · 태백관내고등학교장 · 충동문화 추천)에게는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0 조(운영세칙)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